**개발 용역 계약서**

(주)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이하“수요처”이라 한다)과 (주)엔쓰리(이하 “공급처”이라 한다)는 수요처의 웹 크롤링 및 자료 수집 프로그램 설계 및 구현의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

본 계약의 목적은 "수요처"가 의뢰하고 "공급처"가 수행하는 개발용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개발용역"의 정의 】

본 계약에서 "개발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급처" 또는 "공급처"의 감독 하에 있는 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개발로서, 이 경우 "공급처"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와 그 결과물은 하기 1항 및 2항에 명시한 것을 말한다.

1. "구체적 기술"에 대한 개발 및 그 결과 보고서

2. 기타 상세한 "용역"의 범위 및 결과물은 별도로 정의하는 기술 개발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에 한한다.

제 3 조【 "용역"의 기간 】

제2조에서 정한 "용역" 기간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2023년 09월 30일까지(1개월)로 한다. 단, 위 기간은 쌍방의 사전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본 계약서에 첨부되는 기술 개발 계획서의 수정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 4 조【 보고서 및 결과물의 제출 】

“공급처”는 제3조에 따른 "용역"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역"에 대한 보고서 및 결과물을 “수요처”에게 제공한다.

제 5 조【 결과물 및 지적재산권의 귀속 】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의 결과로 발생한 보고서 및 결과물은 “수요처”의 소유로 한다.

제 6 조【 검수 및 하자보증 】

1. “수요처”는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수 완료 하여야 한다.

2. 검수과정에서 발견된 하자가 제2조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공급처”는 쌍방이

합의한 별도의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공급처”의 하자보증기간은 위 1항에 의한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하

자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공급처”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뱔견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처”의 하자보증 책임은 “수요처”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간 연

장한다.

4. 제1항의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공급처”가 이를 무상으로 수

리하여야 한다. 단, 하자발생 이유가 “수요처” 의 지시 또는 “수요처”의 취급 부주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공급처”가 전항의 지정기일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수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수요처”는 “공급처”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자신이 보수를 완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에 소모된 비용은 “공급처”가 부담하여야 한다.

6. 16개 국가, 16개 송금사를 대상으로 개발 진행을 하고, Site별로 특이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제 7 조【 "용역"의 대가 및 지급 방법 】

"용역"의 대가는 본 계약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총 일금 일천오백사십만원정 (\15,400,000)으로 한다.(부가세는 포함)

제 8 조【 비밀 유지 】

1. “수요처”와 “공급처”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내용 및 개발과정에서 알게 되는 상대

방의 모든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

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일반당사자가 이를 위배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

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 5년간 계속 유효하다.

제 9 조【 신의 성실 및 상호 협조 】

1. “수요처”와 “공굽처”는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수요처”는 “공급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용역" 내용과 관련하여 “공급처”와 협의하

여야 하며, “공급처”는 “수요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요처”에

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

1. “수요처”의 해지

“수요처”는 “공급처”가 본 개발용역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

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급처”는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

내에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개발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개발설계서를 “수요처”

에게 제출하고, “수요처”가 “공굽처”에게 지급한 제7조에 따른"용역"의 대가에서 기

집행 개발집행비를 차감한 금액을 “수요처”에게 반환한다.

2. “공급처”의 해지

“수요처”가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개발용역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굽처”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 기

간내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공굽처”는 이미 “수요처”

가 “공급처”에게 지급한 제7조에 따른 "용역"의 대가를 “수요처”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해지협의

위 1항 및 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공급처”는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용역개발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개발설계서를 “수요처”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용역개발 정산은 기 집행부분에 한한다. 단, “수요처”의 귀

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요처”는 “공급처”에게 용역개발 집행 정산서

상의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개발설계서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급처”에게 귀속

하며, “공급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급처”는 “수요처”에게 제7

조 제2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만을 하고 개발설계서 등에 대한 지적소유

권은 “수요처”와 “공급처”의 공유로 한다.

4.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수요처”와 “공급처”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모두 서명 날인한 이후에 유효하며, 제4조에 따른 결과물 제출과 동시에 종료한다.

제12조【 불가항력 】

본 계약의 당사자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석 및 분쟁해결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2. 당사자간의 분쟁이나 이견이 3개월 이내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에 의해 해

결하도록 한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

“수요처” 또는 “공굽처”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처” 또는 “공급처”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기타사항 】

1. “수요처”와 “공급처”는 상호 상대방의 사전 서면상의 동의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청, 담보제공 또는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2. “수요처”와 “공급처”는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수요처"과 "공급처"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첨부파일 】

첨부1.환율스크래핑\_Competitors exchange rate website

첨부2.견적서(2023-웹크롤링)

계약일자 : 2023년 09월 01일

|  |  |  |
| --- | --- | --- |
|  | (수 요 처) |  |
| 회 사 명 : | (주)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
| 주 소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생각공장 B동910호 |
| 대 표 자 : | 성종화 (인) |
|  |  |
|  | | |
|  | (공 급 처)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엔쓰리 |
|  | 주 소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3길 9,809호(성수2가,아이템플) |
| 대 표 자 : | 김종일, 박종구 (인) |
|  |  |